

Deloitte.

세무 및 관세 뉴스

2023년 2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 선물로 제공한 물품에 대한 VAT
- 프로모션 프로그램 등록이 없는 선물 비용

간접세 ("Indirect Tax")

-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발행된 건설기성 및 서비스에 대한 계산서는 VAT 감면 대상이 아님
- 다른 지역에 부동산 양도의 경우 VAT 및 CIT을 할당해야 함
- VAT 환급 신청 시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개인소득세 ("PIT")

- 직원에게 선물 및 보너스에 대한 PIT

출입국

- 출국 일시중단통보서에는 개인 정보가 충분히 포함해야 함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한 외국인 계약자의 경우 베트남회사가 대신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외국 기술 플랫폼에서 계좌 패키지 구매활동에 대한 FCWT

무역 및 관세

- 관세-비즈니스 파트너십 개발 계획 공표
- 수입 후 해외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한 VAT 처리 안내
- 제31/2022/TT-BTC호 시행규칙 및 특별우대 수출입 관세율을 공포하는 시행령 수행에 대한 지침
- 수출가공기업 ("EPE")에서 국내기업에 임대하는 기계, 장비, 금형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정책 안내
- C/O 양식 B는 2017년 버전 HS코드를 여전히 사용함
- 우수공인업체 (AEO)에 대한 ASEAN 회원국 간의 상호인정협정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선물로 제공한 물품에 대한 VAT

회사가 물품을 구입하여 직원 선물용으로 제공하고 일부 샘플을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비용은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며 제4조 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CIT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현행 CIT 법규정상 선물에 대하여 발행된 계산서의 징수할 수 없는 매출 VAT는 CIT 목적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없다

(Bac Ninh 세무국의 2023년 2월 3일 제/274/CTBNI-TTHT호 OL)

프로모션 프로그램 등록이 없는 선물 비용

회사가 박람회 및 전시회에서 고객에게 무료 물품 (수수료 없음, 반품 없음),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지만 상공부에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의 생산 및 사업활동에 사용된 조건을 충족하고 합법화적인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추어 지면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CIT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Long An 세무국의 2023년 2월 9일 제/423/CTLA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Indirect Tax”)

지침 문서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발행된 건설기성 및 서비스에 대한 계산서는 VAT 감면 대상이 아님.

제123/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및 설치 활동에 대한 계산서는 대금지급이 완료된 여부에 불구하고 건설공사항목 수락 및 인수인계의 시점에 발행되어야 한다.

- 납세자가 2022년에 건설공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규정된 VAT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 동시에 납세자는 제125/2020/ND-CP호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잘못된 시점에 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벌금은 400만동 ~ 800만동 (세금체납의 경우); 300만동 ~ 500만동이 (체납세금이 없는 경우) 부과될 수 있거나 경고로만 처리한다 (체납세금이 없고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1월 18일자 제2619/CTHN-TTHT호 OL, 2023년 2월 6일 제3871/CTHN-TTHT호 OL 및 2023년 2월 8일 제4209/CTHN-TTHT호 OL)

다른 지역에 부동산 양도의 경우 VAT 및 CIT을 할당해야 함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제1조 b항에 의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부동산 양도활동의 경우 회사가 VAT 및 CIT를 아래와 같이 할당, 신고, 납부해야 한다:

- VAT의무는 제13조 2항 b호에 따라 할당된다 (지역에 VAT 미포함 수익 x 1%). VAT 신고 및 납부는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13조 3항 b항에 따라 수행된다.
- CIT 의무는 제17조 2항 b호에 따라 할당된다 (지역에 법인세 수익 x 1%). CIT 신고 및 납부는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17조 3항 b항에 따라 수행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1월 19일 제3134/CTHN-TTHT호 OL)

VAT 환급 신청 시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제7조 2항 d점에 따라 납세자가 VAT 환급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02/GTGT호 양식으로 별도의 VA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로 설립된 신규 사업에 대한 VAT 환급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제100/2016/ND-CP호 시행령 제1조 6항 및 제49/2022/ND-CP호 시행령 제1조 3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2월 1일 제3473/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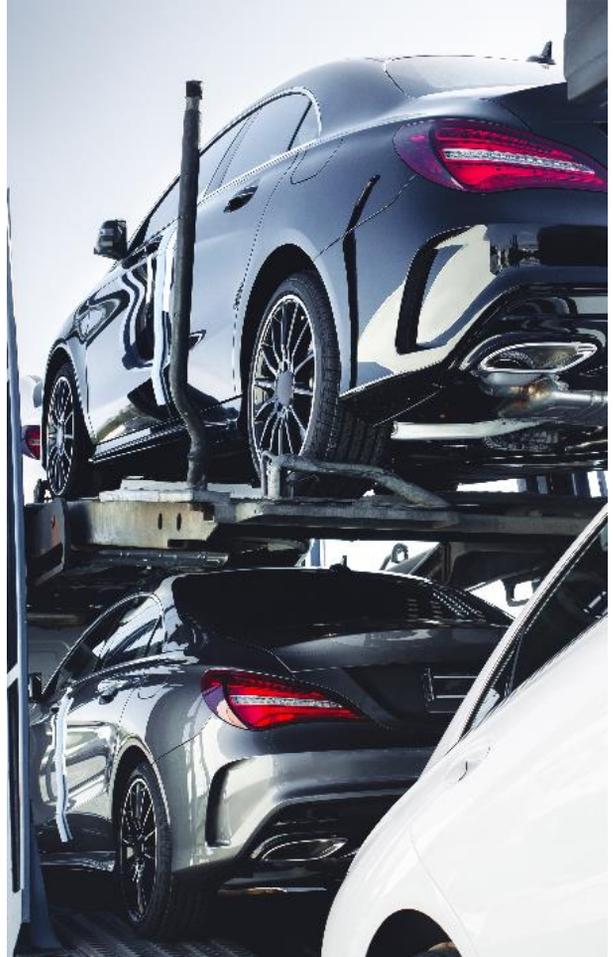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직원에게 선물 및 보너스에 대한 PIT

- 직원의 업무, 전문 지식 및 직업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대급비용은 PIT 면제된다. (제111/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2조, 2항, dd.6 점)
- 콘테스트에서 1000만동 이상인 상금의 경우 회사가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5조 1항 g점에 따라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급여 또는 임금 이외의 혜택 (현금 또는 비현금)의 경우 회사가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5조 1항 b점에 따라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본질적으로 급여 또는 임금이 아니며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조 10항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현물 선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PIT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2월 1일
제/3469/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출입국 지침 문서

출국 일시중단통보서에는 개인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야 함.

공안부의 2022년 12월 5일 제4225/BCA-QLXNC호 OL는 전문 법규문서에서 발행된 양식으로 출국 일시중단 통보서/결정서를 작성할 때 출국 일시 금지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79/2020/TT- BCA호 시행령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부처,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

특히, 전문법에 의한 출국 일시중단 통보서/결정서 양식에는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번호/여권번호, 기타 개인 정보를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 담당한 공무원의 연락처도 기재해야 대상을 발견할 경우 적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공안부의 2022년 12월 5일 제4225/BCA-QLXNC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한 외국인 계약자의 경우 베트남회사가 대신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음

외국인 계약자가 제 80/2021/TT-BTC 호 시행규칙 제 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의한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 신고 및 직접 납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인 계약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베트남조직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OL는 해당 VAT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15조를 참조하는 공제원칙 및 조건만 제공한다 (제2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조 10항 및 제73/2016/TT-BTC호 시행규칙 제1조에서 개정됨).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10월 2일 제/4643/CTHN-TTHT호 OL)

외국 기술 플랫폼에서 계좌 패키지 구매활동에 대한 FCWT

외국인 계약자가 기존 기술 플랫폼에서 유틸리티 계좌의 판매로 얻은 소득은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저작권 소득으로 간주된다.

- CIT: 과세소득에 CIT 세율 10%가 적용된다.
- VAT: 제71/2007/ND-CP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아니고 기술 이전 또는 지적 재산권 이전이 아닌 경우 과세소득에 VAT 세율 5%가 적용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2월 7일 제/4035/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지침 문서

관세-비즈니스 파트너십 개발 계획 공표

관세총국은 2023년 1월 19일에 2023년 관세-비즈니스 파트너십 개발 계획을 도입하기 위해 제104/QD-TCHQ호 결정을 공표하였다.

따라서 이 계획에는 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최신 관세 규정 및 정책을 파악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05개의 활동을 포함한다. 관세당국과 기업들간의 협의, 감독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법규정과 관세 법규정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권고한다.

(관세총국의 2023년 1월 19일 제104/QD-TCHQ호 결정)

수입 후 해외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한 VAT 처리 안내

관세총국은 2019년 3월 14일 제1453/TCHQ-TXNK호 OL를 발표하여 수입된 물품이 해외로 재수출될 경우에 VAT 환급을 안내한다.

따라서 VAT 납부 완료된 수입물품은 2018년 2월 1일부터의 수출 신고서로 해외로 재수출될 경우 납부된 수입VAT가 현행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된 세금으로 처리된다.

(관세총국의 2023년 2월 1일 제423/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제31/2022/TT-BTC호 시행규칙 및 특별우대 수출입 관세율을 공포하는 시행령 수행에 대한 지침

관세총국은 VNACCS/VCIS 시스템을 사용한 관세 신고 및 제31/2022/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수출입 물품목록에 따른 수출입 관세율 적용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VNACCS/VCIS 시스템은 2022년 12월 29일 제5731/TCHQ-TXNK호 OL의 부록 1에 나열된 HS 코드에 대한 MFN 관세율, 일반 관세율 및 할당량 외 수입 관세율에 대한 자동적인 결정을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되었다. (관세율 열에 "KBTC" 로 표시된 항목을 제외함)

제5731/TCHQ-TXNK호 OL에 첨부된 부록 2의 1열에 나열된 HS 코드에 대해서는 기업이 다음 원칙에 따라 수동으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 제31/2022/TT-BTC호 시행규칙 (부록 2의 첫 번째 열)에 따라 HS 코드를 적용한다.
- 해당 HS 코드 및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 설명의 관련 시행령, 관세율 결정서를 참고한다.

2.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우대관세율, 수입우대관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 관세율의 자동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VNACCS/VCIS 시스템에서 특별우대 관세에 대한 16 시행령이 업데이트되었다.
- 특히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우대수입관세의 경우 기업은 관세코드 B27로 신고해야 하며 관세율은 수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3년 1월 18일 제 315/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가공기업 (“EPE”)에서 국내기업에 임대하는 기계, 장비, 금형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정책 안내

1. EPE가 투자허가서상 등록된 목표에 따라 EPE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계, 장비 및 금형을 국내 기업에 임대할 경우:

- **절차:** EPE는 일시수출 절차를 수행하고 국내 기업은 일시수입 절차를 수행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국내기업은 재수출 절차를 수행하고 EPE는 재수입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수입관세:** 가공계약에 따라 기계 및 장비를 임대/임차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다른 경우에는 국내기업이 일시 수입 단계에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하고 추후 재수출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VAT:** 기업이 일시 수입 후 재수출의 형식으로 기계,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일시 수입 후 재수출된 물품은 VAT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업이 VAT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국내기업이 기계,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하며 신규 관세 신고서로 수입관세 및 VAT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용과정에서 기계장비가 파손되어 재수출이 불가능하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법규정에 따라 폐기 절차를 수행한 경우 국내 기업이 VAT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EPE가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기계장비를 국내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사용 목적 변경하고 신규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전에 비과세 물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충분히 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3년 1월 17일
제300/TCHQ-GSQL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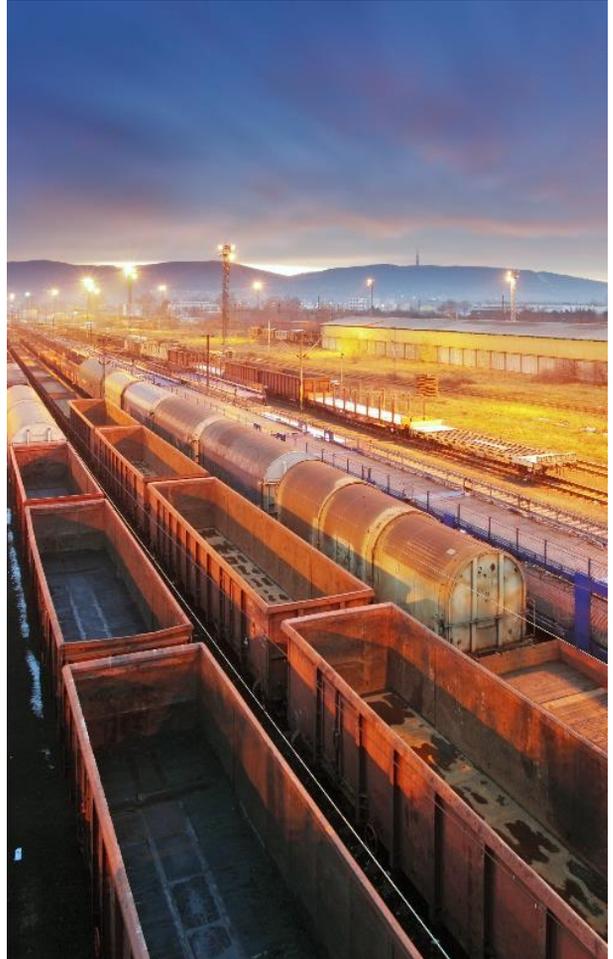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C/O 양식 B는 2017년 버전 HS코드를 여전히 사용함

산업통상부는 제31/2022/TT-BCT호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 및 수출 물품의 품명을 맞추기 위해 2017년 버전 HS 코드에서 2022년 버전으로 전환한 품목별기준 ("PSR")를 여전히 검토중이다.

현재 2017년 버전 HS 코드는 여전히 C/O 신청서류에 사용된다. HS 코드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C/O 양식 B에 제31/2018/ND-CP호 시행령에 의한 규정에 따른 2022년 버전 HS 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 2022년 버전 HS 코드는 C/O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은 수입국에서 신고된 HS 코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3년 2월 10일
제48/XNK-XXHH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기타

우수공인업체 (AEO)에 대한 ASEAN 회원국 간의 상호인정협정

2023년 2월 14일에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회원국의 관세총국은 AEO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MRA)을 온라인으로 체결하였다.

당사자가 프로그램 간에 호환성을 설정한 후에 AEO업체에 다음과 같은 상업적 이점을 제공하기로 한다:

-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서류 검사 및/또는 물품 실무검사를 줄여 통관 시간을 단축한다.
- 검사대상으로 선택한 다른 참가 당사자에서 프로그램 회원에게 운송되는 물품에 우선 검사를 적용한다. 중단된 경우에도, 프로그램 회원에 대한 신속한 통관이 계속 이행된다.

정보 교환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참가자는 이름, 주소, 고유 식별자/AEO 참조 번호, 인증 상태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업데이트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업데이트에는 행정 절차, 프로그램 적용 또는 수정 및 기타 유용한 정보도 포함한다.

베트남에서 이 협정 이행에 대한 법규문서가 발행하면 Deloitte는 다음 세무뉴스에서 추가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